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3. 8. 2.(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  
김 현 상임위원  
이상인 상임위원 (3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세 분이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23년도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23년도 제24차, 제25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이의 있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예,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7월 12일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마무리에 최근 TBS가 조레 폐지 이후 경영혁신(안)을 내면서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했는데 그것이 시의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보고 요청을 했었던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KBS2를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어서 “KBS2는 한국방송공사법에 근거해서 허가증을 내준 방송사업자다. 이 부분에 대한 법률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라고 이야기했고, 당시 이상인 상임위원도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이 8월 2일인데 오전에 제가 출근해서 10시에 회의가 있는데, 오늘 검토 보고한 내용은 달랑 한 장짜리 보고서를 받았습시다. 지금 현재 사무처의 업무행태가 상임위원이 지적하고 공개회의에서 검토내용을,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가….

○ 김 현 상임위원

- 회의록과 속기록에 관련된 것을 접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므로,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견이시고 회의록을 접수하고 의견을 별도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이것을 접수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말하는 기회를 받고 얻어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이,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지금 제24차, 제25차 회의록과 속기록에….

○ 김 현 상임위원

- 이 속기록을 접수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십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아니, 회의록과….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속기록을 다시 말씀드리면 KBS2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방만경영과 고위층에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다 결부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이상인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속기록은 속기록으로 치부해 버리고, 속기록이라는 것은 내용입니다. 형식과 내용을 이야기하면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사무처가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에 나온 내용은 속기록으로 끝나고 검토해 달라는 내용은 위원장님께서서는 적어도 상임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제대로 보고되고 속기록에 남은 사항이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야당 측 위원이 제기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7월 12일 지적됐던 그리고 속기록에 기록된 이 내용이 제대로 보고되어 있지 않음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든 공식 회의를 통해서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래서 접수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을 접수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속기록을 접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KBS 이사장 해임 건의에 대해서 지난 회의 때 이상인 위원이 제기했고 이것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잘못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 오늘 회의 때 논의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MBC, 방문진에 대해서는 제가 단식을 진행할 때 위원장님과 이상인 위원이 와서 권고를 했고 그 권고를 받아들일 때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위원장님이 독단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접수하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협조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속기록을 접수한 부분과 안전으로 되어 있는 내용과 함께 전반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온당한지에 대해서 비상하게 안전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2가지입니다. KBS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보고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방문진에 대해서도 저와 두 분의 약속이 어겨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속기록에 대해서 속기록은 그냥 속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기록에 있는 내용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와 김효재 부위원장의 임기 마지막이 8월 23일이고, 회의가 있어 봐야 두세 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비중 있고, 제대로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일구 이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후 회의 때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위원장님이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을 끊고 중단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회의 진행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의록과 속기록은 접수하시는 것입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아닙니다. 저는 접수를 거부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지금 요구사항이 KBS 남영인 이사장 해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것을 의제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이고,
- 김 현 상임위원
  - 예,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비상하게 제가 오늘 제기하는 것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또 하나는 MBC 감사를 중단해 달라.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은 중단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약속을 저는 지켰다고 생각하고.
- 김 현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약속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 2가지를 안전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예, 안전으로 다루어달라는 것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일단 회의록과 속기록은 접수하시는 것입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아닙니다. 이 회의록이 단순히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속기록이 12일 소수의견으로….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김 현 위원님은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 김 현 상임위원
  - 예.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은….

○ 이상인 상임위원

- 지난 속기록에 나와 있는 회의 때 마지막에 김 현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은 TBS 정상화와 관련된 현장 상황 파악 보고, 두 번째는 일부 정치인이 KBS 2TV 폐지 여부를 운운하는데 그것에 대한 가능 여부 검토, 이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 김 현 상임위원

- 법상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그 부분은 그대로 다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방통위에서 정식 의안 내지는 위원회나 간담회 때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속기록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김 현 위원님은 제24차, 제25차 회의록과 속기록의 접수를 거부하셨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예.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과 저는 속기록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 분의 거부와 함께 동의한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 6.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은 안건논의는 공개로 진행하되, 사업자 의견청취는 영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TBS와 관련해서 비공개를 듣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 있고, 비공개 전에 처분 내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렇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볼 때 비공개로 진행되는 내용을 제한해서 들을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TBS 사안에 대해서 다 듣고 난 후 처분을 내리는 것이 혹여 그 사업자와 관련해서 같이 오시는 분들의 의견이 정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상업광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 TBS가 상업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방통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니까, 종합해서 보고를 받되, 비공개로 진행된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운용의 묘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지금 말씀대로라면 안전이 2가지인데 2가지의 결론은 의견을 듣고 같이 내리자는 말씀이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사무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 배중섭 기획조정관

- 회의 운영에 지장은 없고, 여기에서 결정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하려고 하는 <나(안)>은...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런데 이 안전이 별도의 안전입니다.

○ 배중섭 기획조정관

- 그렇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이것이 별도의 안전으로 보고된 것은 최근입니다. 같이 묶여서 3가지가 다 함께 보고가 됐었고, 지난번 간담회 때부터 분리돼서 보고가 됐습니다.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예, 같이 묶어서 했던 것은 TBS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이해의 편의를 위해 했던 것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도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지금의 안건은 광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제출 여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안건입니다. 그다음에 의견진술받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제 생각에는 김 현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일리가 없지 않으니, 그러면 보고는 다 듣고 그다음에 공개된 안건의 결론과 비공개 안건에서 의견청취를 듣고 내리는, 결론은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렇게 하시지요.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예, 그렇게 하시지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의결안건 가>를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2023-26-081)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안건 나>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과태료 칠백만 원(700만 원)을 부과한다”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실제 방송내용과 다른 거짓자료를 제출하였음을 방심위가 확인하여 방통위에 통보해 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2년 10월 6일 방심위는 TBS에서 <가히> 및 <동아전람> 방송광고와 유사한 내용이 방송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10월 17일 방심위는 TBS에 TBS-FM 방송운행표를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10월 21일 TBS는 TBS-FM 일일운행표를 방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방심위는 TBS의 제출 자료가 실제 방송내용과 다를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히>와 <동아전람> 관련 방송사실이 총 97회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월 23일 방심위는 TBS의 거짓 자료제출과 관련해 방통위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왔습니다. 12월 2일 방통위는 TBS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12월 16일 TBS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방심위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심위 자료요구에 방송사업자가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방심위는 방통위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방통위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심위 조사경위 및 결과입니다. 방심위는 TBS <가히> 및 <동아전람> 방송광고와 유사한 내용이 방송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위 가히·동아전람의 전체 방송현황 및 방송시각, 방송광고 또는 캠페인 프로그램 구분 현황 확인을 위해 '22년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의 TBS-FM 방송운행표를 TBS에 요청하였습니다. TBS는 방심위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일일운행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TBS가 제출한 자료에는 <가히> 및 <동아전람> 관련 방송 사실이 총 97회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자의 제출 의견 요지입니다. 방심위의 자료 요구에 대해 TBS는 실제 협찬 시간이 누락된 '일일운행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방심위의 자료 요청 목적이 특정 광고의 송출 여부 자체인 것으로 판단하고 '일일운행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담당부서 업무에 대한 사소한 오해 등으로 인한 것이고, 허위 또는 기만의 의도는 없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과태료 처분(안)입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 여부입니다. TBS가 방심위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방심위가 확인하여 방통위설치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그 사실을 방통위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금액입니다. 관련 규정은 방통위설치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별표]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은 700만 원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감경·가중 여부입니다. 감경기준에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반상태 시정·해소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1/2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중기준과 관련해서는 1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가중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건 위반행위의 경우, 감경 또는 가중 사유로 인정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결론적으로 TBS의 거짓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하여 방통위설치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별표]

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 7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8월 말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이 건과 관련해서 제일 처음 보고가 진행된 것이 지난해 10월 26일이었지요? TBS 상업광고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고, 그래서 이것을 처분을 내려야겠다는 내용의 보고가 최초로 된 것이 10월 26일이지요? 맞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10월 21일,

○ 김 현 상임위원

- 사무처에서 보고한 것이 10월 26일이지요?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위원회 간담회에 보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상파방송정책과와 방송광고정책과에서 최초 보고가 10월 26일에 있었던 것이 맞지요? 이것이 앞서 10월 5일 방송된 것이 민원이 접수됐고, 그다음에 10월 6일 방심위도 알게 된 것이고, 방심위 건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심위는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까, 아닙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방심위에서는 방송심의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규정을 준수했는지, 또 상업광고나 캠페인 프로그램이 방송됐는지 현황 파악을 위해 TBS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고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자료 제출 요구 내용이 무엇이지요?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방송현황 및 방송시각, 방송광고 또는 캠페인 프로그램 구분 현황 확인을 위해 TBS에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자료 요청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자료 요청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가히·동아전람의 전체 방송현황 및 방송시각, 방송광고 또는 캠페인 프로그램 구분 현황'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이 저희 방통위에 보낸 공문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방심위에서 보낸 공문은 심의를 위해서 해당 기간 캠페인 프로그램 방송 내용 확인을 위한 세부 방송시각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런데 그 뒤에는 이것이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위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았지요?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그 이후 방통위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니까 심의를 하지 않았지요? 다만 말씀하십시오. 짧게 짧게 갑시다. 그러니까 하지 않았지요? 심의를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심의를 하고 안 하고 부분을,
- **김 현 상임위원**
  - 상업광고니까 심의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방심위에 그 질의를 드렸고, 방심위는 방통위가 이 건과 관련해서 상업광고를 판단한 이후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언제요? 그러면 우리가 다 결정을 내린 뒤에 다시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 잘하십시오.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방심위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상업광고로 결정을 내려서 과태료·과징금을 다 부과하는데 방심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런데 방심위는 내용심의이지 않습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내용심이라든 것은 그 안에 이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글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동아편람>도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심의가 끝나고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내용이라면 방통위가 과태료·과징금을 내고, 그다음에 방심위가 내용심의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요. 방심위가 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방통위가 결정을 먼저 내립니까? 언제부터 방통위가 결정을 내리고 심의·의결한 것을 방망이를 두드리고 난 후 다시 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장님께서 “직무와 관련된 심의가 가능하다”라고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예, 맞습니다. 안건 <4> 관련 규정에….
- **김 현 상임위원**
  - 그 법을 다 읽어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방통위설치법 제25조 제4항에 방심위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필요한, 심의할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심위는 심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심의를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 방심위는 심의가 안 된 상태이고.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심의는 심의규정 여부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법에 근거해서 합시다. 법을 해석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법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법에 있는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방심위 방심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할 경우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심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심의를 하지 않은 것이고,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심의규정 저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그래서 보통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예까지 들었습니다. 방송사업자가 우리가 방통위의 귀책사유로 명백히 상업광고임에도 불구하고 배중섭 국장 시절에 필러라고 규정해서 상업광고라고 해서 부여를 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21년도, 2022년도에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상업광고를 통해 이득을 본 방송사업자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여하지 않고 기간을 줘서 이것을 이제부터 상업광고로 규정할 테니 이 기간 안에 있었던 것을 바로 잡는 유예기간을 줘서 해결했습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담당과 여러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떠난 분도 계시지만 그때 배중섭 국장이 처음에 이것을 필러로 규정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광고, 뭘 내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TBS에는 방송운행표를 보내달라고 했고, TBS는 이것을 협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락한 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든 그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곳에 해당 사업자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하라고 다시 요청합니다. 처음으로 이것이 거짓으로 누락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겠다. 그것도 10월 1일부터 16일 동안 대략 95회를 누락했고, 두 번째는 <동아전람>이라는 것이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2회 누락했습니다. 그런데 TBS의 실무자가 커뮤니케이션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네는 협찬이라고 생각해서 방송했고, 협찬이라는 단락을 조정해서 광고주와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무자는 협찬이라고 했는데 상업광고라고 판단했다면 행정지도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지상파방송정책과에서는 “그것은 도리 없다. 미디어랩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나머지 것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보고하고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인데 오늘에서야 가져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종합된 것인데, 한 사업자의 범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무처는 제일 무거운 것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감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고 행정지도가 가능한 부분을 다 배제한 채 제일 무겁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심의위원장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데 방심위는 현재까지 아직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도 있다,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가 문의한 내용의 방심위 답변은 심의를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심의를 계획이 없다고 최초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상업광고이기 때문에.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심의를 계획이 있다, 없다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 **김 현 상임위원**

- 보고받았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방심위가 판단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방심위에서는 심의를 계획이 없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제가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예.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위원님, 방심위는 “위원회 상업광고 결정 이후에 심의를 진행하겠다” 이 정도의 답변이었지,

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결정된 뒤에 하겠다는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 박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결정된 뒤에 이것은 규정위반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이야기한 제재조치이지 않습니까? 배중섭 국장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언론인도 같이 법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위원장은 제21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항입니다.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 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제25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심의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다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엄격히 제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심위가 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거짓으로 제출했다. 초기에 거짓으로 제출하고 허위로 제출했으나 다시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1차 자료 제출을 너희가 거짓으로 제출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것도 1,400만 원을.’ 너무 무거우니까 750만 원으로 깎으라고 했더니 그것이 다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가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할 때 과태료 규정을 1/2 감경할 수 있는 감경기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된 영문인지 방통위 사무처가 TBS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방송사업자나 여타의 방송사업자에 비해 굉장히 무겁게 죄를 묻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혹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예, 답변하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3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통위와 방심위가 TBS 관련 제재 안건을 논의하는데 방심위 심의가 안 됐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는 것은, 첫 번째 방통위가 하는 것은 전파법과 랩법에 의한 광고 여부에 관한 판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심위가 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의 전파법과 랩법에 의한 광고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 규정상에 있는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경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광고 여부를 전파법과 랩법의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1호부터 제4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 즉 방통위 제재를 위한 안건 내용과 방심위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방심위의 심의 여부를 기다려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왜 TBS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것인가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 김 현 상임위원

- 답변을 그렇게 다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의혹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은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그것은 사무처가 기준금액을 제시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경·가중 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위원님, 그리고 사실관계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방심위에 TBS가 다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추가로 제출한 사실은 없고, 저희 방통위에 우리가 사전 통지를 하고 난 후 저희 방통위에 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것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렇지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과장님, 김 현 위원님이 의견 제시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김 현 위원님의 의견으로 그치시고 사실관계는...

○ 김 현 상임위원

- 답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예를 들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근거가



지금 10월 1일부터 10월 16일 동안 중간에 5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방심위도 10월 6일 동시에 파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위는 방송은행표를 제출해 달라고 10월 17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용도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방심위가 심의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고 방통위에서 이것이 상업광고인지 협찬인지 둘 중의 하나로 정하면 그것은 방통위 소관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홀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은행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서 은행표를 제출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아까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막지 마시고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아까 하신 말씀을 반복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BS는 어떤 의견을 줬냐면 방송은행표와 협찬은행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방심위의 자료 요구에 대해 실제로 협찬시간이 누락된 방송은행표를 제출했고, 이는 담당부서의 업무 오해로 기인한 것이며, 허위 또는 기만의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TBS가 알려 왔지요?

○ 박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최초에 아까 이야기했던 10월 5일 TBS가 상업광고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접수가 됐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그 전에 보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보냈습니까?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상업광고를 했고, 그래서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장 명의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 박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12월 2일 사전통지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 박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12월 2일 기준금액으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상업광고를 했고, 17일 공문을 보내서 받은 내용이 아까 이야기 했던 방송분인 줄 알고 했는데 협찬 또는 상업광고가 누락돼서 과태료를 부과할 테니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그때 가서 다시 꼼꼼히 챙겨서 전체를 다 보고하게 된 것이지요? 과정은 그렇게 된 것이지요?

○ 박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위원님 안전이 중요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이지 않습니까? 누락됐다, 1차 누락됐기 때문에 1,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그것을 조정할 것 아닙니까? 회의에서 결과를 내야 하는데, 그것이 지난주 7월 24일 오후 2시 이전까지는 700만 원이었다가 오후 2시에 보고할 때 1,400만 원으로 가중금액으로 보고가 다시 됐지요?

○ 박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지난주 간담회 때...

○ 김 현 상임위원

- 아니요. 지난주 간담회 직전에 오후 2시 전까지는 700만 원 금액으로 보고를 했는데 위원장님에게 보고는 금요일에 했고, 저에게는 월요일 오후 2시에 보고가 왔는데 그 전에는 700만 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 박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월요일에 보고드린 그 부분은,

○ 김 현 상임위원

- 회의가 2시 반이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박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위원장님 대행계도 똑같이 기준금액이 700만 원이고 가중 700만 원이 가능하다고 자료로 보고드렸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때 700만 원으로 왔다가 그 날 오후 2시 회의에 1,400만 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 박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

○ 김 현 상임위원

- 확인해 주십시오.

○ 콧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1,400만 원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센 금액 아니냐라고 해서 700만 원으로 원안으로 가자고 이야기했고, 저는 다시 감경(안)을 주장할 텐데 700만 원으로 이야기했다가 1,400만 원으로 보고된 이유가 그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 콧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기준금액을 700만 원으로 이야기했고….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니까 원래 보통 기준금액이 있고 이것이 심각하다, 가중해야 한다고 할 때 안이 있고, 그것을 감경해야 할 때 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콧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런데 700만 원으로 그동안 과태료 부과금액을 보고하다가 지난주에 1,400만 원으로 다시 상향해서 한 이유가 있는지만 묻는 것입니다.

○ 콧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사업자에게 통지할 때는 기준금액으로 통지한 것이고, 위원회 안건 상정 직전에 간담회를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을 기준금액으로 갈 것인지, 가중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는 가중한 안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가 했는지 몰라서 제가 사무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세 번째, TBS만 유독 무겁게 죄를 묻는 사무처의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한 배중섭 국장의 논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법의 기준에 맞춰서 최초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업자, 다른 것 방심위에서 법정제재를 받건 행정지도를 받아서 문제가 된 사안을 별건으로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상업광고를 할 수 없는 TBS가 '가나다라마바사' 한글을 알리는 <가히>와 <동아전람>의 건축과 관련된 6일 동안에 있었던 그것을 가중을 물어서 1,400만 원을 물어야 한다는 사무처가 마지막 회의, 간담회에 올리기 직전에 위원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좀 뜬금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위원님, 아니라고 한 말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배 국장님, 됐습니다. 상임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끝까지 말대꾸하지 마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토 달지 마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알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현 위원님의 의견이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TBS가 상업광고 방송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순서를 바꿔서 먼저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것을 논의하고 있고, 저희가 700만 원 기준에서 그것을 가중할 것인지 또는 감경할 것인지, 지금 김 현 위원님은 감경 의견을 냈는데 저도 가중이 조금 중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간담회 때 냈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이따가 다시 TBS 자체 의견진술을 듣고 결정하겠지만 상업광고 관련된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논의되고 있는 과태료 액수가 있고 과징금 액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이 우선 <가히> 부분에 대해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협찬을 가장해서 광고수익을 얻은 것 아닙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이상인 상임위원**
  - 그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가히> 같은 경우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동아전람>과 관련해서는 얻은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730만 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원래 750만 원으로 계약했다가 730만 원으로 감해진 것이지요?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이상인 상임위원**

- 결국 TBS는 이 건으로 부당하게 얻은 광고수입이 4,700여 만 원 됩니다. 그것을 따로 몰취하거나 몰수하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이상인 상임위원**

- 결국 그 정도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해야 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앞에 행정처분 과징금 같은 액수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 액수가 가중해도 전체를 합쳐도 광고수입에 못 미친다. 저희가 아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료 제출에 있어서 방송사가 성실하게 제출해야지, 그런 고의를 가지고 일부를 누락한다든가 또는 변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 제출하는 것은 따로 그것에 대해 처벌조항이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이따가 TBS에서 의견진술하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광고수입 액수와 이 액수와의 형평성 문제도 한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잠깐만요. 관련해서 뒤에 배석해 있는 법률자문관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목과 관련해서 상업광고를 해서 취한 이득이 4,700만 원이면 그것을 몰수해야 하는 개념으로, 100% 환수해야 한다는 법적인 기준이 혹시 있는지 자문을 얻어 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재량권인지 아닌지 감경과 가중에 대한 이야기이고 1,400만 원이 부족하니까 더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법적인 것이 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뒤에 배석해 계시는 파견 나와 있는 검사님이 한번 의견을 주시지요.

○ **윤원일 법률자문관**

- 규정에 처분 수준에 있어서 결정하는 재량이 있다면 당연히 결과적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법이라고 판단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행정청에 가중·감경이 있다면 가중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지요?

○ **윤원일 법률자문관**

- 당연히 가중되어야 하는 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회사의 규모나 운영실적, 또 이것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됐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저희가 행정청 규제기관으로서 상업광고나 아니면 이후에 많은 방송사업자들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TBS 상업광고와 관련된 처분이 이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2024년 12월까지 방송사에 대한 허가증을 내줬는데 재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과징금 이런 것들이 재허가 과정에서, 물론 재허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거의 폐업 수준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는데 이것이 통상 TBS만 해당되는 위한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이전 종편사업자, 특히 종편사업자가 최초 재승인과 재재승인 2011년, 2014년, 2017년, 2022년 총 4번에 걸친 재승인 과정에서 소위 거짓과 허위로 보고를 했을 경우 저희 행정청에서 내렸던 그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이후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이전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관련해서 처분을 내렸던 사례와 부합해서 비교했을 때 이것이 가중인지, 감경해도 되는지, 아니면 재량권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이것이 통상 하는 것 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담당과가 어디지요? 지상파방송정책과 입니까, 아니면 방송기반국입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이것이 방송법 과태료 부과기준 사항이고, 저희 기반국에서는 광고협찬과 관련된...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회의가 비공개로 이와 관련된 TBS로부터 의견진술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처분을 내리기 전에 재량과 감경, 가중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가 방통위를 운영하면서, 제가 적어도 한 달 남겨둔 이 시점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린 내용이 우리가 규제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규제지만 적어도 방송사업자가 방송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력도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공적책임과 공정성과 공공성을 다 기하고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서 주로 가중하는 범위보다는 감경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합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정리가 돼서 회의에 올려졌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란이 빚어진 사례는 제 기억에 몇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 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전에 적어도 과태료·과징금이 이렇게 최초로 잘못했고 실수를 인정한 방송사업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부과된 사례가 있는지를 보고해 줄 것을 사무처에 회의 진행 중에 지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회의 진행 중에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추후 방통위 운영을 위해서도 그런 양형기준은 필요할 테니까 아마도 있지 싶은데, 그런 것을 추후 김 현 위원님께 보고하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저는 비교·검토가 필요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TBS 운행표에 97회가 누락되었다고 되어 있지요? 방송광고를 총 몇 회 했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제가 알기로 135회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한 130 몇 회지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운행표라는 것이 가령 하나의 시트에 시간대별로 뉴스, 대담, 교통정보, 또는 이런 식으로 한 장에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24시간 방송내용을 다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렇지요? 한 장에.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가령 예를 들면 '뉴스 프로그램 운행표'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방송법에는 방송운행표를 방송사업자가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니까 대담 프로그램 운행표, 뉴스 프로그램 운행표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아닙니다. 방송시각별로 프로그램 운행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일반 상업광고가 가능한 방송국은 뉴스, 광고, 그다음에 캠페인 이런 식으로 한 장에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렇다면 이것이 97회 누락됐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뺐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TBS는 방심위가 확인해서 저희에게 보내온 것은 총 97회를 누락했다고 보내왔고, 저희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의뢰해서 정확한 현황파악을 했는데 총 131회를 누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누락한 것이 이 횟수이고, 협찬광고….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지금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한 장에 하나의 <표>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표>로 여러 개의 시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97회가 빠졌다, 별도의 <표>로 나누어져 있다면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방송국 <표>라는 것이 하나의 <표>에 시간대별로 방송되는 운행 프로그램이 모두 다 적혀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단 몇 회만 빠져도 그것은 의도를 가지고 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답변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일반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운행표를 보관하게 되어 있고,

○ **김 현 상임위원**

- TBS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TBS의 경우에는 TBS에서 저희에게 알려온 바로는 방송운행표와 협찬운행표를 별도로 하고 있어서 실제 협찬운행표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방송운행표를 보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일부는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협찬은행표가 별도로 있다면 방송은행표에는 협찬이 전체 빠져 있다면 그 주장이 이해가 되는데 일부 16회는 기록되어 있고, 97회는 누락됐다고 하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의결은 TBS로부터 의견청취를 듣고 <의결안건 가> 의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2023-26-082)**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안건 다(안)>입니다.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호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2022년도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 간 매체교환율은 1:0.37로 하며, 2022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 2022년도 매체교환율과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청점유율 산정방법입니다. 시청점유율은 방송법 제6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 등에 따라 방송사업자 본인, 특수관계자,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방송사업 경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 시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게 됩니다. 시청점유율 산정체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용자 조사 및 시장조사 결과를 통해 2022년도 매체교환율을 측정한 결과 일간신문의 영향력은 0.37로 집계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간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입니다. 환산대상은 방송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4개 일간신문입니다. 다음은 환산결과입니다. 24개 일간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결과, 조선일보 계열 3.170%, 중앙일보 계열 1.583%, 동아일보 계열 1.465%, 매일경제 0.41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입니다. 산정대상은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301개 방송사업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결과입니다.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종합편성·보도PP 시청점유율은 (주)조선방송, 제이티비씨(주),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전문PP의 시청점유율은 (주)씨제이이엔엠, (주)엘지헬로비전 등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

점유율 산정 결과, 「방송법」 제69조의2 제1항에 명시된 시청점유율 상한을 초과한 방송사업자는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2022년도 매체교환율 및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지금 보고한 점유율 산정 결과에서 보듯이 미디어 환경 변화와 경쟁 심화로 향후에도 특정 방송사가 여론을 독점하고, 또 시청점유율 제한인 30%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는 국내 여론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간접지표이자 우리 위원회의 제작·편성·광고정책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객관적 자료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시청점유율 제도를 더욱 개선·발전시키고 시장에서의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보고안건 가(안)>입니다.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 이유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을 보고드리고자 함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올 3월까지 6개 미디어렐사

로부터 영업보고서를 제출받아 올 6월까지 이를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 법정위원회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고시 개정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2022년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랩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미디어랩사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를 고시 하여야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신규 지원 사업자 지정 여부 및 그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기존 지원 대상 사업자의 지원규모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DMB가 지난 2019년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하면서 저희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그 당시에 원고는 법 제정 부칙 제5조에서 정한 결합판매 지원제도의 적용대상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해당하며, 법 시행 당시에 KOBACO가 결합판매를 통해 지원하던 중소지상파방송사에 대해서만 고시할 수 있는 기속행위라는 방통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방통위가 재량을 갖고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사업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기존 사업자들의 몫 축소가 예상되나 이런 요소를 고려하여 방통위가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시 개정 기본 방향입니다. 첫째,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정소송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 규모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파방송광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경기위축 등으로 최근 지상파방송 광고판매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시장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최근 결합판매 지원이 연내 미이행되고 있는 등 부진한 결합판매 실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기준을 하는 동시에 시장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디어랩사별 결합판매 평균 비율입니다. 고시 제4조 제6항 [별표1]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미디어랩사별 결합판매 평균 비율은 미디어랩 대행 지상파방송사들의 직전 5년도 지상파방송광고 총매출액 대비 전체 지원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5년간 결합판매 총 매출액을 환산한 비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KOBACO는 12.0461%, (주)에스비에스엠앤씨는 9.1362%를 비율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시 제5조에서 정하여 할 결합판매 지원대상사업자 및 각 사별 지원규모입니다. 첫 번째, 결합판매 지원대상사업자입니다. 올해는 기존 37개사와 함께 한국디엠비(주)를 신규 지원대상사업자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행정소송 판결취지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2년 미디어랩법 제정 당시의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중 한국디엠비(주)를 신규 지원대상사업자로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유사한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주)와이티엔디엠비의 경우 광고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기존 사업자의 피해 규모가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결합판매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체광고매출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한국디엠비(주)와 (주)와이티엔디엠비의 채널구성 및 주요프로그램, 총매출, 광고매출, 손익현황 등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에 허가된 OBS경인FM을 포함하여 2012년 이후 신규 개국한 라디오방송국의 경우에는 지상파방송국 허가 단위가 법인 단위가 아니라 방송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디어랩법 부칙에서 정한 입법 시행 당시의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해 이루어지는 결합판매 지원대상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3년 신규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사업자는 DMB사업자의

개국 시부터 현재까지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고, 과거 사실상 교차보조지원 판매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OBACO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각 지원 대상사업자의 각 사별 지원규모입니다. 신규 지원대상사업자 지원규모 산정방식입니다. 결합판매 실적이 없는 신규 지원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자의 지상파방송광고 총매출액에 전체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43%를 적용하여 금액을 환산하고 이를 KOBACO의 5년 평균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대비 비율로 환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산된 지원비율은 0.0170%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존 지원대상사업자의 지원규모 산정방식입니다. KOBACO 대행 27개사의 경우에는 각 사의 최근 5년간 결합 판매 매출액 및 KOBACO 대행 사업자의 지상파방송광고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 규모를 산정하되, 신규 지원대상사업자의 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산출된 조정률(99.8589%)을 적용하여 각 사별 지원 규모를 정률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SBS M&C 대행 10개사의 경우 각 사의 최근 5년간 결합판매 비율을 바탕으로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38개 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 규모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결합판매 지원의무 이행기간의 유예입니다. 고시 제9조 제2항의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미디어렐사가 해당연도 결합판매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광고 매출 확정 후 3개월 이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 이행 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8개월로 이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사전 규제 심사를 진행한 후 9월에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결합판매 사업자별 최소 지원규모 세부산정결과 및 고시 행정예고(안),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지속적인 지상파 광고매출 감소와 함께 결합판매 매출액도 축소되고 있어서 지원대상 중소 방송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4분기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매출액 감소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와 사무처에서는 이런 어려운 시장 현실과 지난 행정소송 결과를 고려해서 이번 결합판매 비율과 지원 규모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무처에서는 의견청취 등 후속 절차를 통해서 원만한 고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 (2023-26-080)**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안건 가(안)>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사업자 측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내용 중 사실 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전파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업광고방송이 금지된 TBS 교통FM방송국의 상업광고방송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작년 10월 5일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올 2월부터 3월에 TBS 등 관련사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에 미디어법 위반 관련 TBS의 의견진술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피심인은 1990년에 최초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광고방송은 제외되며, 협찬 및 공익광고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허가사항 위반 관련 사항입니다. 「전파법」 제25조 무선국은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파법 시행령」에서는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방송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 직접 판매 관련 사안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해당 방송물의 상업광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첫 번째, <가히> 방송물>이 되겠습니다. <가히> 방송물>은 2022년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40초 분량 131회 방송되었습니다. 방송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도입부에 ‘TBS캠페인’이라 고지는 하였으나, 방송된 내용 전체가 특정 기업의 일반 상업광고를 그대로 방송하고 있어 이를 ‘방송사가 제작한 공익성 캠페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방송내용 중 ‘한글이 쉽다’, ‘한글이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져서 고맙다’는 한글 관련 공익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화장품제조사의 (주)코리아테크의 대표 브랜드명인 ‘가히’가 한글을 이용하여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한글의 우수성에 빚대어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브랜드 홍보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다른 방송사에 이를 상업광고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방송물은 TBS가 행한 공익성 캠페인으로 볼 수 없고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상업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아전람> 방송물>입니다. <동아전람> 방송물>은 2022년 10월 3일

부터 9일까지 7일간 20초 분량 26회 방송이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자체는 협찬고지가 가능한 '문화·예술 행사'로 볼 수 있으나, 이 박람회는 TBS가 주최·주관·후원한 사실이 없어 방송사의 공익행사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사의 공익 행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제공한 협찬주명을 고지한 협찬고지 방송으로 볼 수 없으며, (주)동아전람이 주관하는 특정 박람회를 널리 알려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방송물로, '상업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방송사에서도 다 이를 방송광고로 송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6 페이지입니다.

####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 허가사항 위반 관련해서 방송정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반 내용입니다. TBS 교통FM의 방송사항에 따라 상업광고방송 송출이 불가능하나, 상업광고방송 2종을 157회 송출하여 「전파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TBS 교통FM 방송사항은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으로서 상업광고방송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반 건수 관련입니다. 위반 건수 산정 관련해서 위반 상황·계약건수·방송횟수 중 상업광고방송 송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계약 건수를 위반 건수로 보아 총 계약 건수인 2회 위반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업광고방송 송출은 허가된 방송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전파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과태료 및 과징금 병과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과태료(안)입니다. 「전파법」 제25조 제2항 위반은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대상으로, 1회 위반 기준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중이나 감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안)으로 별도의 가중·감경 없이 기준금액에 따라 2건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검토하였습니다. 과징금(안)입니다. 「전파법」 제25조 제2항 위반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운용정지 대상이나, 청취자 보호를 위해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가 가능합니다. 운용정지는 기준 기간(90일)의 1/2 범위에서 가중이나 감경이 가능하며, 운용정지기간 확정 후 둘 중 무거운 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둘 이상의 동일한 처분이므로 무거운 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운용정지기간에 대한 검토(안)입니다. 별도의 가중·감경 없이 기준 기간에 따라 90일, 그리고 두 건 이상의 동일한 처분이므로 90일의 1/2를 가중한 총 135일을 검토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안)입니다. 「전파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운용정지 135일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사항입니다. 1일당 167,000원, 135일을 계산하여 22,545,000원을 과징금 부과(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방송광고 직접 판매 관련 사안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인 TBS가 TBS 교통FM의 방송광고 2종을 실시하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 위탁하지 않고 어지니스, 광륜 2개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하여 방송광고를 한 행위는 미디어렐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디어렐법 제5조 제1항 위반 시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벌칙에 처해질 수 있어 고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김 현 상임위원

- 잠깐만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3개 과 다 같이 앉아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상업광고를 잘못했을 경우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이 처분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또는 엄정하게 한 것인지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저의 주문에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무처, 지금 여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어떤 특정...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니까 방송사업자가 상업광고를 했는데 방통위가 처분을 내릴 때 과징금·과태료, 그 다음에 고발, 또는 행정지도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초 처분을 내릴 때 처리방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지상파방송국에서 상업광고 송출이 허가가 안 되어 있으나 송출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고, 동일하게 허가사항과 다르게 방송해서 전파법을 위반해서 지금과 같은 조항으로 처분한 사례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과거 어떤 내용이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과거에는 허가받은 출력 이외 출력을 증강하거나 감경해서 위반한 사례가 있어서 지상파방송 그리고 공동체라디오에 대해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과태료 1회 적발, 또 2회 적발했을 때인데 이번의 경우 2회 적발로 보시는 것입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각각 1회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중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하지는 않았고, 저희 안은 일단 기준금액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이것이 지난번에 지상파에서 위반사례를 보고하라고 할 때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19년도 안테나 출력 위반이 있었다. 대상사업자 KBS, 문화방송, 지역MBC, 기독교방송 그래서 위반사항이 허가증상 안테나 출력보다 낮은 출력으로 AM방송국을 운용했기 때문에 「전파법」 제25조 제2항으로 해서 1회 적발된 과태료 100만 원 했고, 2회 적발된 KBS 2개소, 한민족방송, 서울의소리 과태료 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이것의 의미로 보면 1회 적발된 KBS가 또 2회 적발됐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 아닙니까? 동일한...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당시에 과태료는 다 기준금액을 부과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KBS가 7개소가 적발됐고, MBC는 12개소가 적발됐고, CBS는 5개소가 적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태료를 100만 원 부과했지 않습니까? 지금 TBS는 이 기준으로 보면 2개소입니까, 3개소입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TBS는 2회로 판단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이 기준으로 보면 1회 적발인데 KBS는 7개에서 출력위반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런데 100만 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두 프로그램에서 했다는 것을 2회로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 기준을 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앞서 제가 방송광고 관련해서 처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가중·감경 또는 행정 지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 했는데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담당과에서 이미 보고서에 보고됐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전에 2가지가 있었습니다. 방송광고정책과에서 예전에, 물론 이것은 (舊)방송위원회 건인데 “협찬고지 범위를 위반했다. 그래서 상업광고다”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분을 내렸지요?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전 방송위원회에서 주의 조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행정지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KBS-2TV, MBCTV, SBSTV인데 방송내용으로 보면 자막으로, 이것은 방송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밤은 낮이 될 수 없다. 아니다. 1879년 에디슨 전구 발명”, “질병은 예방할 수 없다. 아니다. 1796년 최초 백신 접종”, “사진은 움직일 수



없다. 아니다. 1895년 최초 영화 상영”, “별은 띄울 수 없다. 아니다. 1957년 인공위성 발사”, “통신, 소리일 뿐이다. 아니다. 2007년 WCDMA 통신혁명”, “초고속 데이터, 통신, 영상, 전화, 영상로밍. 아니다. 그 생각이 혁명의 시작입니다. ○○○ 캠페인”,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생각이 혁명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쇼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해서 KBS-2TV, MBCTV, SBSTV가 협찬이라고 해서 했다가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사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보고한 것 있지요? 혹시 상업광고를 했는데 방통위가 미리 기 접수를 못 해서 얼마 만에 수익을 얻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최근에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지….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 물어보지 말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이전에 저에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방송광고정책과에서 1월 9일 보고했습니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저희가….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TBS 협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다, TBS는 협찬계약이라고 했는데 규정과 이해부족 또는 첫 위반 사례에 대한 과한 처분이 아닌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뒤에 보고해 달라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이고 반복적 행위로 보이지 않고 수도권지역 라디오방송사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행정지도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망했고, 혹시 행정지도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제가 2023년 1월에 했었지 않습니까?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때 온 보고서에 어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때는 질문하신 내용에서,

○ **김 현 상임위원**

- 사례가 있는지를….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이것이 행정지도 가능성에 대해서 필터광고에 대해서 행정지도한 사례 요구를 위원님께서 하셨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랬지요. 필터광고에 대해서 행정지도 했습니다. 앞서 이익분이 얼마냐를 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이익분이 얼마입니까? 이때 필터광고를 했던 예를 들어 보도전문채널, EBS 등이 분명하게 이것은 후원광고, 상업광고 아닙니까? 수억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래서 회수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해서 우리가 필터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광고로 구분해서 방탈기금을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했지 않습니까?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런데 그 건과 이 건의 차이점은 그 당시에 기부금품 모집광고에 대해서 필터라고 예전에 안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을 따지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넘어간 것이지만 여기에 앉아계신 분도 있고, 어쨌든 비영리 후원 모집광고이고 기부금품에 의해서 일반광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한 것입니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것은...

○ 김 현 상임위원

- 그렇지요? 행정지도한 것입니다. 제가 결론은 이것은 매년 수억 원의 돈을 벌었고,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업광고로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한 사안입니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다시 들어가서 아까 위원장도 궁금해서 질문하고 저도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방심위에서 최초 TBS에 공문을 보냈던 날짜가 10월 17일이지 않습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상업광고를 했다고 해서 민원접수가 10월 5일 하고 10월 6일 방심위도 확인을 같이 한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과가 방송기반국입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예, 제출 요구한 것이 17일 맞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17일에 했는데 이때 어떤 내용으로 요청사유를 보냈습니까? 요청사유, 공문 갖고 계시지요? 공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간 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자료, 2022년 10월 1일 토요일부터 10월 17일 월요일까지 TBS-FM 방송운행표, 요청사유, 해당 기간 캠페인 프로그램 방송 내용 확인을 위한 세부 방송시각 확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출기한을 10월 21일 금요일에 보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방심위에서 TBS에 보내서 1차 서류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TBS는 협찬이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락이 됐습니다. TBS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상업광고를 했다고 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세 과가 달라붙어서 공문을 요청한 것은 처음 보는데, 보냈습니다. 해당 기간 캠페인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내용을 확인했으니까 협찬 일부만 나온 것이겠지요. 당시에 TBS는 협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 TBS가 협찬했던 것은 그 내용을 나머지 방송사에서 상업광고라고 했던 내용과 다르게 TBS는 우리는 협찬이니까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서 나머지 방송사 라디오에서 했던 내용과 차별을 뒀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오늘 그 고마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부터 그까지 그부터 그까지 가히”, 그래서 ‘가히’가 상업광고라고 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 고마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가 사실은 다른 방송사에서 없는 내용이 첨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협찬이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또 방심위가 미디어재단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10월 17일 날은 이것도 방심위이고, 또 보냅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나면 일일운행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일일운행표라는 것은 방송운행표지요? 방심위가 10월 17일 날 보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행표를 또 보내겠지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또 무엇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락했다고 해서 11월 23일 방심위가 보냅니다. 운행표에서 <가히> 및 <동아전람> 관련해서 총 97회가 누락됐다. 그래서 방통위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보내니까 화들짝 놀란 TBS가 다시 다 뒤져 봤겠지요. 그래서 다 봤더니 아까 이야기한 97회가 누락이 됐습니다. <가히>는 40초 분량이 131회가 돼서 95회가 누락됐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아전람>은 10월 3일부터 10월 9일 7일간 20초 분량 26회 방송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 2회 누락이 됐던 것으로,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

○ 김 현 상임위원

-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적절히 정리해서 요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발언 기회가 10분에 한번 그다음에 추가질문하면 7분, 5분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지금 김 현 위원님 말씀이 제가 들어도 매우 혼란스럽고, 하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위원장님이 혼란스러우면 그렇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은 미안합니다만,

○ 김 현 상임위원

- 위원장님이 진행하는데 본인이 혼란스러운 것을 전체가 혼란스러운 것으로 규정해서 방해하시지 마시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 의견이나 사실 확인할 것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 사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아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간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방심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방송운행표와 협찬운행표와 상업광고라는 것을 초기부터 적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운행표를 달라고 한 것이고,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누락이 됐다,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 공문이 발송된 것은 맞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맞습니다. 그 경과가 그대로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것이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을 요청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방통위 사무처가 다른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애초에 방송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자료를 요구할 때 1차

보냈다가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방문진에 대한 자료 실사도 그래서 현장 실사를 나가겠다는 것 같은데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았습시다. 그러면 재차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옵니다. 1차 자료가 일일은행표였고, 2차가 캠페인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누락이고 거짓보고다라고 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문을 접수한 사례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아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까 행정지도로 같음했기 때문에 없다는 점을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 지도를 왜 검토하지 않고 했는지에 다시 한번 저의 주장을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방송 은행표와 일반은행표 내지 협찬은행표가 같은 것이 아닌 것은 맞지요? 아까 콕진희 과장, TBS의 경우 방송은행표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 콕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왜냐하면 다른 상업광고를 하는 방송사들은 애초에 그 시스템상 은행표에 상업광고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상업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찬광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만 보고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콕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TBS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TBS의 입장이 아니라 초기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 콕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방송법에 모든 방송사업자는 24시간 방송은행표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위가 요청을 했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제가 잠깐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 현 위원님.

○ 김 현 상임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라....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현 위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 행정청이 TBS에 요구한 자료의 제목이 일관되지 않고,

○ 김 현 상임위원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행정청이 이를 데면 혼동되게 한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 김 현 상임위원

- 귀책사유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우리가 지금 처분하려는 처분내용은 과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이 과하다, 아니다는 나중 이야기이고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분절차가 있기 때문에,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 김 현 상임위원

- 아니, 정리를 잘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자료를 보고했는데 그 보고서에,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것을 20~30분 동안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위원장님은 그것이 자꾸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 김 현 상임위원

-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자꾸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애초 10월부터 저는 이례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한 이야기 또 하십니다. 좀 너무 하십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위원장님, 그러면 사회권을 이상인 위원에게 넘기고 잠깐 쉬시다 오십시오.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귀찮고 힘들면 사회권을 넘기기도 합니다. 왜 위원장이 힘든 것을 저의 질문을 방해하고 진행 관련해서 간섭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 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사무처의….

○ 김 현 상임위원

- 아니, 한 방송사업자의 허가와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문하는 것을 왜 본인은 이것을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요점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요점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방해하시고 그러십니까? 왜 방해하십니까? 아니, 나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무엇보다 지금 바깥에 TBS 관계자들이 의견진술하러 와 있지 않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TBS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 김 현 상임위원

- 그래서 지금 사무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지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 알고 있고, 모르는 것 아닙니다.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정도 처분이면 사업자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무처에서 제출한 처분이면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무처 이야기와 기존에 보고된 내용과 현장에서의 답변을 재차 확인하면서 사무처의

보고가 누락된 것이 없는지, 애초의 보고와 중간 보고와 과정에서, 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까다롭게 해야지만 특정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나중에 행정권을 직권을 남용해서, 직무를 유기해서 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지루하지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이야기했지만 최초 보고를 10월 26일에 받았고, 한상혁 위원장이 국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사항이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태료·과징금, 고발 또는 과태료가 두 번, 이렇게 엄청난 행정청의 처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때는 아마 부위원장이 아니어서 이 내용을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들여다본 사안이기 때문에,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다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십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 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운행표와 협찬표와 별지로 되어 있는 것은 TBS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왜 질문하셨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 운영에 대해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너무 중언부언하시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할 수도 있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너무 중언부언하시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방송사에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다른 것이기는 한데 각 방송사에서 이것을 얼마 정도 이익을 봤는지에 대한 답변을 보면 종편에서는 기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 사항이 기밀입니까? 얼마의 이익을 봤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물론 관련은 없지만 TBS는 아니지만 보고서에 보면, 다른 방송사도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기부금품 모집광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아닙니다. 필러 말고 <가히>와 <동아전람> 관련해서.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지금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을 밝힌 곳과 밝히지 않은 곳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 **김 현 상임위원**

- 행정청에서 TBS가 얼마나 과중하게 돈을 벌었는지, 또는 나머지 방송사와 형평성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른 방송사에도 자료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저희가 방송사에 한 것은 아니고 웹사에 요청했는데 웹사에서 계약해서 송출한 현황은 저희에게 알려줬지만,

○ **김 현 상임위원**

- 금액에 대해서 비공개로 보고했지요?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개별 광고주별로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다른 건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영업비밀이라고 한 곳도 있고, 영업비밀이 아니어서 보고한 곳도 있지요?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데 금액 밝힌 곳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금액을 밝힌 곳도 있고 금액을 밝히지 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비밀이고, 어떤 곳은 영업비밀이 아니어서 밝힌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그 비용이 똑같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TBS가 라디오로 송출될 때 광고비와 나머지 방송사에서 나가는 비용과 같습니까?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같습니까? 크게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 김 현 상임위원

- 차이가 있지요?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개별 광고계약에서 광고주별로 얼마에 계약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라디오 광고로 나갔을 때의 비용과 방송사에서 나갔을 때의 비용에 차이가 있지요? 가중·감경까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의 의도 까지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10월 26일에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송이 가는 권역에 따라서 광고비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차이가 있지요?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저희가 계약금액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확인해 보십시오. 비공개 질의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이야기하는 것 다시 한번 방송기반국, 아까 방송은행표에 모든 방송사가 상업광고든 협찬이든 그것이 다 포함돼서 보고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는 모든,

○ 김 현 상임위원

- 방송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위원님, 방송법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 김 현 상임위원

- 이것이 방송법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용을 알고 있겠네요?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방송법상,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방송법상 모든 방송사업자는 방송운행표를 비치하도록, 24시간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는 자기 심의규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TBS가 협찬운행표와 방송운행표를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이것은 방송법 위반입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아닙니다. 사실은 방송운행표에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TBS가 그렇게 지켰어야 하는데 자기들은 상업광고를 하지 않으니까 협찬운행표를 별도로 한다,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했다면 협찬운행표에 있는 내용들이 방송운행표에 협찬이 하나도 없었더라면 그 부분의 주장이...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송운행표에는 상업광고든 협찬이든 다 들어가야만 방송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말씀은,

○ 김 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방송법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어떤 부분이요?
- **김 현 상임위원**
  - TBS가.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저는 허위 제출 자료에 대한 것을 위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방송 자료 제출은 별개의 사항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서 판단할 때 참고할 사항이지, 그것이 위반이다, 그것은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저희는 오늘 안건에 대해서 거짓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 **김 현 상임위원**
  - 방송법까지도 그동안 보고했었기 때문에 다시 서면보고된 내용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송법상 운행표에는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상업광고를 할 수 없는 방송사 말고 모든 방송사에게 적용되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위원님, 그것은 정황을 파악할 때 한 판단자료가 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
- **김 현 상임위원**
  -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자마다 다르다?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제가 그 안에서 직접 조사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방송법에 따라 그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일반 방송사업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다 하셨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뭐가 지금,

○ 김 현 상임위원

- 달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송법상,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

○ 김 현 상임위원

- 왜냐하면 법을...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렇게 하십시오. 김 위원님이 파악하신 바를 말씀하시고 그것에 따른 김 위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지,

○ 김 현 상임위원

- 그래서 지금 김효재 위원에 대한 답변 다르고, 저에 대한 답변이 차이가 생겨서,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사무처 직원들을 괴롭혀서, 사무처 직원들을 닦달하고 괴롭혀서 일을 방해하시자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위원장님,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아니, 지금 하시는 일이 사무처 직원들을 자꾸 닦달해서 그들을 괴롭히자는 것이 김 현 위원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그렇게 규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괴롭힌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무슨 책임을 집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상임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과정을 닦달하고 괴롭힌다, 이 발언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닦달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닦달해서 괴롭...

○ 김 현 상임위원

- 속기록에 있습니다, 속기록에.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아니,

○ 김 현 상임위원

- 괴롭힌다고 이야기했고 닦달한다고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상임위원의 질문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대단한 상임위원이십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심의·의결하기 전에 그 발언에 대해서 규정하고 닦달하고 괴롭힌다는 아주 저작거리에서도 쓰지 않는 이야기를 공식 회의에서 상임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사무처 직원을 뒤통에서 괴롭히자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아닙니다. 아까는 뒤통하고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마음대로 들으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들은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을 가지고,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질문권을 박탈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잠깐만요. 상임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다른 상임위원이 사무처 직원 앞에서 망신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그럼 묵과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럼 묵과하지 마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그 정도로 생각하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묵과하지 마시라고!
- 김 현 상임위원
  - 그 정도로 지금 상임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리 지를 사안이 아닙니다. 뒤통하고 괴롭히다니요?
- 이상인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저도 발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말 같은 말을 해야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아니, 회의를..., 말 같은 말을 하셔야지요, 위원장님.

- 이상인 상임위원
  - 저도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아무리 그 자리에 앉으신다고 그렇게 막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요. 사과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이 TBS에 대한,
- 김 현 상임위원
  - 잠깐만요. 위원님, 아직 이야기 안 끝났으니까요. 사과하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사과 못 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사과하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못 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제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무슨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다는 것입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곧 사과하게 되실 것입니다. “뉘달하고 괴롭히다” 명예훼손입니다. 사무처 직원이 답변할 권리가 있는 것을 왜 방해하십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마음껏 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회의 방해하지 마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방해는 누가 방해합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회의를 꼭 이렇게,
- 김 현 상임위원
  - 꼭 이런 식으로 해서 깡판 부리는 것은 위원장님이십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렇게 회의를 질질 끌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 김 현 상임위원
  -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하든 말든 그것을 왜 위원장님이 지적하십니까? 상임위원은 외부의 간섭이나 지시 없이 하는데 왜 방해하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할 의무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은 위원장님이 할 말이 아니지요, 원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삼척동자가 웃겠습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저도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마음대로 하셔놓고, 무슨 여기 와서 회의 조금 길게 한다고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삼척동자가 웃겠습니다”라는 말은 명예훼손이 아닙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삼척동자는 한문입니다. 아주 고결한 한자성어입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저도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예,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책상을 두드리며) 위원님,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진행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게 사무처와 언론인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괴롭혔다'는 표현은 굉장히 명예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질문을 방해했다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괴롭혔다는 겁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김 현 위원님.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지금 과장님을 괴롭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사과하시라고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아니,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왜 사과합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속기록 확인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속기록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제가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 속기록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장 권리와 상관없이 저의 권리로 확인해 주십시오.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한 워딩을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잠깐만 회의 진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아무리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위원의 이야기가 있더라도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서 '괴롭히고' 그런 표현을 써 가면서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의 명예가 있는 것이고, 제가 괴롭힌다고 이야기하는데, 괴롭히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제가 괴롭혔다고 생각하면 사과해야지요. 반복되는 질문을 하지 못하는 규정도 없고, 회의시간은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보는 위원장님이 상임위원을 그렇게 규정을 내리고 이야기하면 제가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마음 놓고 하겠습니까? 자기검열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이 공문을 보고 질문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10월 26일 것을 가지고 다 읽어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괴롭히는 것이고, 뭐가 되는 것이지요? 질문이 반복적일 수 있지요. 질문 반복한 것을 가지고 반복했다고 규정해서 괴롭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저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니까 사과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비공개 회의 때 이야기할 때는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그것은 답아서 안 되는 내용이고 비공개 회의 때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공개회의에서 기록이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10월부터 해서 기다리고 있는 TBS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고, 제가 본 적이 없는 지상파방송정책과와 방송기반총괄과와 방송광고정책과가 누차에 걸쳐 계속적으로 보완·보강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천만 원이 될지, 고발이 될지, 아니면 과태료가 될지, 과징금이 될지 모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그 전에는 비공개 간담회 때도 들었고, 공개 간담회 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축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공개 회의 들어가기 전에 사무처 3개과 과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있는 데서 질문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방해하니, 반복된 질문을 하니 정리해서 하라는 등, 그렇게 해서 국회와 빗대서, 여기가 국회입니까? 독립기구인데, 왜 국회를 자꾸 비교합니까? 여기가 행정청이고 정부기관인데 왜 국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괴롭힌다니, 제가 무엇을 괴롭힙니까? 발언 정정을 하셔도 안 되고 그 발언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상임위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니, 제가 사무처 직원과 저와 같이 동열에 놓고 괴롭힌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하시라고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동료가 아십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사무처와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예, 저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사무처와 어떻게 동열입니까? 사무처는 위원에게 보고하는 거지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같은 동료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동료'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동열'로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직급은 다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직급은 다르지요.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저는 지금 엄연히 보좌를 받는 사람들의 보고를 받는 것이지, 그리고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무처 직원과 상임위원이 같습니까? 직급이 같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지, 동료는 맞는데 저는 동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저도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잠깐만요. 지금 제가,

○ 이상인 상임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야지요. 위원님 같은 동료 위원께서 그러면 안 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괴롭힘을 당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김 현 위원님도 고정하시고,

○ 김 현 상임위원

- 아니, 고정하라니요? 제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사무처에 속기록 확인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그러니까 말을 제가 듣기로도 '괴롭혔다', 그 말 용어 자체를 다시 생각하시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두 번 세 번 듣다가 다시 이야기한 것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 이상인 상임위원

- 그러니까 참으시고 이어서 회의 진행을 하셔야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지시하는 것이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아니, 두 분이 아무리 다수라고 해도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 이상인 상임위원
  - 일단...
- 김 현 상임위원
  - 정회하십시오. 지금 2시간 다 되어 가니까 정회하셨다가 확인하는 것 5분가량 안 걸리니까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되니까, 국회 예를 들었으니깐 보통 국회도 2시간 되면 공기청정도 해야 하고, 정회 좀 하시지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계속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위원장님, 그다음 절차 진행하시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정회 좀 하시지요.
- 이상인 상임위원
  - 그대로 진행하시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확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쉬고 싶으시면 가서 쉬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 위원장님 아무리 두 분이 다수라고 해도 이런 다수는 없으니깐 확인하십시오. 뭐 그것이 어렵다고, 지금 그 이야기면 이미 확인이 끝났습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김 현 위원님, 김 현 위원님이 마이크 잡으시고...

○ 김 현 상임위원

- 사무처장님, 제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이것은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 배중섭 기획조정관

- 회의운영 담당국장입니다. 회의의 주재자는 위원장님이시고, 속기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의견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토 달지 마십시오. 국장님 발언권 준 것 아닙니다. 국장님, 상임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국장님에게 발언하라고 이야기한 것 없습니다.

○ 배중섭 기획조정관

- 회의 내용을 확인하라고 하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회의 확인하라고 이야기한 것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도. 사무처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김 현 위원님이 별도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아니, 사무처장에게 이야기하는데 왜 국장님이 답변하고 그러십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사무처장 권한대행 아니고 사무처장이 엄연히 앉아 있는데 확인하라고 이야기한 것을,

○ 배중섭 기획조정관

- 회의운영 담당국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김 현 위원님.

○ 김 현 상임위원

- 아니, 직무대행이 있지만 위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을 왜 무시하고 위원장 직대 이야기만 들으십니까? 배중섭 국장님. 옛날에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한상혁 위원장 할 때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한상혁 위원장이 계셨으면 이런 말도 안 하셨겠지만 분명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위원장님이 지시하셨으면 해야 되겠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지시입니다. 위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3명이 회의할 때는 각각의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방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이 지시하는 것은 사무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때 독임제 성격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협의제, 합의제입니다. 너무 위원장 직대 권한을 그렇게 강조해서, 강화해서 모든 것이 다 위원장의 권한이다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동안 3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 김 현 상임위원

- 같이 일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 사무처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현 위원님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아무 말이나 그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이것도 명예훼손입니다. 아무 말이나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도 명예훼손입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위원장님, 다음 절차 진행하시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명예훼손이니까 생각하셔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냥 말씀대로 주장하지 마시고요.

○ 이상인 상임위원

- 추가적인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하시고,

○ 김 현 상임위원

- 확인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 이상인 상임위원

- 일단 TBS 행정처분, 이 과태료 건에 대해서 먼저 의견진술을 하시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위원장님이 그렇게 회의를 운영해도 안 되고, 위원회는 각각의 위원이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존중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명예가,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까짓것 그것 확인하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무엇을 추후에 하십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회의 진행하시지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예.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아마 회의가 안 될 것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안 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제가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명백히 이야기했습니다. 확인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진행하시지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냥 요구하는 대로 놔두고 진행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런 이야기 막말, 망언하지 마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요구하신 대로 그냥 놔두고.

○ 김 현 상임위원

- 아마 지금 기자들이 쓰고 있으니까 저기에도 다 기록에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괴롭힌다는 표현에 대해서 속기록에서 삭제 요구해 주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아까 말씀 들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 김 현 상임위원

- 아니,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것은 이상인 위원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시고,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회의 하는데 왜 별도의 조치를 취합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아니, 지금 회의 진행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응대해 주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그리고 사무처를 괴롭힌다든가 했던 말을 또 한다든가,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사무처를 괴롭히고, 그 말을 하셨습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회의를 방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 김 현 상임위원

- 평가하지 마시라니까요.

○ 이상인 상임위원

- 그것은 제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나 지금 방청하는 기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방통위에 와서 물론 두 분이 국회의원을 지내셨지만 저는 방통위원이 이렇게 국회보다 높은 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방통위원이라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직원들과 이렇게 지금 여러 기자들이 방청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독선적으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바로 다음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보겠습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이고,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사무처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할 때 질문할 수 있고 답변을 구할 수 있는 저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무처를 괴롭혔다는 표현으로 위원장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저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위원장님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 11시 47분 】

(피심인 관계자 입장)

(피심인 관계자 퇴장)

【 12시 37분 】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정 안건 논의를 위해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처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공개면 기자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마지막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 처분(안)을 마저 보고하겠습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먼저 행정처분에 관한 건 처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 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전 KBS 7개소에 대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때도 다 개별 각각 100만 원씩 부과했습니다. 처분(안)입니다. 과태료,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하여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하는 안으로 보고드립니다. 과징금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하여 135일의 운용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총 22,545,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기관 고발여부입니다. 관련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그리고 금번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전과법」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8월 중에 과태료·과징금 사전 통지를 하고, 8월 말에 서면의결로 최종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먼저 이야기하시지요.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지난번 월요일 간담회 때부터 오랫동안 논의됐고, 조금 전에 관계자 의견청취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때 제 의견도 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TBS에서 방송한 방송 모두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송출 불가능한 TBS가 허가 사항을 위반해서 상업광고방송을 송출했기 때문에 전과법상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합니다. 사무처가 제시한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과태료 200만 원, 과징금 2,254만 5,000원의 부과 처분(안)에 동의합니다. 또 고발은 지난번에도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동일 건으로 과태료·과징금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고발하지 않는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 처분을 하나하나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만 보고한 것 아닙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먼저 과태료·과징금과 검찰 고발 건에 대해서만 안전을 논의하는 것이고, 방심위 관련된 부분은 아직 보고를 드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고,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가중·감경이지 않습니까? 날짜까지 포함해서 감경할 수 있는 최저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최저치는 45일까지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과징금은 751만 5,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저는 보도된 것이 1일부터 16일까지 해서 16일이고, <동아전람>이 6일이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리고 라디오이고 전국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래서 감경으로 할 수 있는 최저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최저치를 말씀하시면 얼마입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단 과태료의 경우를 보면 저희 기준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 2건해서 200만 원인데, 과태료도 1/2로 감경을 한다면 50만 원, 50만 원 해서 총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한 것은 기준일자인 90일에 1.5배를 가중해서 135일을 검토했는데 이 부분을 가벼운 처분, 45일만 적용했을 경우에 751만 5,000 원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저는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아까 이상인 위원이 제가 말하는데 중간에 끼어든 이유 중 하나지만 2022년 2월에 TBS로부터 상업광고 허용에 관한 것을 제안받고 방통위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조례 폐지안이 상정되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이 200억이라는 자산, 매년 200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TBS를 운영하라는, 저희의 2019년 허가 당시의 조건 권고였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 그리고 지금 형편을 들여보면 방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건인데 前 사장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을 현재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운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2개인데 사실은 2개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같은 방송사에서 방송광고가 이루어졌던

점을 하나로 해도 저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하고, 운용정지 기간도 운행한 날짜가 1월 16일이고 7일간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90일에 1/2 감경해서 752만 원으로 하는 것이 허가사항을 위반한 TBS 상업광고 위반에 대한 처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지금 김 현 위원님의 안은 과태료는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고, 그리고 과징금은 90일에서 반을 감경해서 45일 과징금을 같음해서 752만 원이라는 말씀이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예.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은 과태료 200만 원에 과징금은 90일에서 1/2 가중해서 135일을 따져서 2,254만 5,000원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 이상인 상임위원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저희들이 가령 그 기준일을 90일에서 우리는 90일의 반인 45일을 더해서 135일을 같음하는 것이지요? 김 현 위원님은 90일을 절반으로 깎자는 것입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만약 90일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가 됩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90일을 기준으로 하면 1,503만 원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김 현 위원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는 200만 원으로 하고, 과징금은 45일로 감경하지 말고 90일 원래 기준으로 따져서 1,503만원, 그러니까 과태료 200만 원, 과징금 1,503만원으로 하시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부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TBS가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이것은 제가 볼 때 행정권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된다. 과태료 100만 원까지는 전과법 제90조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리 없는 법률위반이라고 치지만 그것을 과징금까지 간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감경기준밖에 없어서 752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운용정지 기간 90일이고 1,503만 원인데 사실은 200만 원 이든 100만 원이든 두 분이 정해서 하면 1,700만 원에 위원회 판단 후 결정하는 방통위법 제25조 위반 허위사실 자료로 해서, 저는 물론 요청하지 않겠지만 350만 원이 되면 대략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면 형법으로 위반하면 몇 년 형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10년 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처분을 내린 적은 아마 방통위 역사상 최초일 것입니다. 이런 라디오방송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벌어진 일을 그것도 행정지도도 아니고 과태료·과징금, 고발 여부, 과태료 이렇게 3개과에서 해서 이 정도 묻는 것은, 본인들이 4,000만 원에 750만 원 해서 신고한 금액을 빼면 대략 얼마가 있을 것이고 번 비용이 있을 텐데 그것을 동시에 다 토해 내라는 그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이 그동안 위원회가 방송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 행정지도 그다음에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방송사 운영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협의해 왔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BS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있었던 사장단들이 책임지고 다 물러나고 프로그램도 폐지가 됐고, 새로운 사장이 와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자구책을 마련한 것도 안 되고, 이분이 와서 처음으로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임명해서 온 사장이 오자마자 방통위로부터 위반사항 처분을 이렇게 지독하게 맞으면, 어떤 의미에 어떤 함의를 줄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계 우리가 부과해서 앞으로 '방송사들이 열심히 잘해'라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것은 좋지만 전반적으로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위원장님이 운용정지 90일을 감경 1/2로 해서 750만 원, 그다음에 과태료도 1/2 경감해서 100만 원으로 해 주시는 것이 향후 오세훈 시장이 운영하려고 하는 TBS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고, 제6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갈무리하실 때 저의 귀책사유라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상업광고를 검토해 달라는 TBS의 요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때 논의하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례 폐지될 때도 위원회가 의견제시를 제때 못 하고 폐지될 때 의견제시했다는 것도 저로서는 아픈 것이라서 아까 사과를 드렸던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묻되, 과태료·과징금 처분은 재량권 하에서 할 수 있는 범주를 위원장님이 선처를 해 주실 것을 오히려 저는 부탁드립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사무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무처에서는 특히 과징금과 관련해서 감경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검토로는 일단 가중이나 감경의 사유는 없다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가중·감경이 다 없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가중에 대한 부분은 2건의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2건에 대한 부분에 1건을 가중한

것으로 검토한 사항이었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사실은 위반내용도 중하고 하나하나 물론 김 현 위원님은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로는 엄정하게 이 부분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 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TBS의 최근의 사정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이번에 처분되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저도 지난번에 고발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조금 있다가 논의할 <의결사항 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금액을 750만 원에서 가중하지 않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200만 원 과태료 그리고 과징금에 대해서도 지금 동일 처분 때문에 90일에서 1/2 가중해서 135일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일종의 절충안인데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서 각 감경을 하면 90일에서 45일씩 되는 것이지요? 동일 처분이라서 거기에 또 1/2 가중하고,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그러면 45일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기준금액에 2가지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각각 90일, 90일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각각 90일 중에 동일한 것이면 하나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무거운 처분에 대해서 가중을 할 수 있다면 90일에 45일을 더 할 수 있어서 저희가 135일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그래서 90일로 하면 1,503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이상인 상임위원

- 16만 7,000원 곱하기 90일이라는 것인데 김 현 위원님은 그것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것이 하나는 상업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2가지가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가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그것도 1건, 16일도 1건 똑같이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런데 감경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처음 있는 일이고 1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니까 제가 낸 절충안은....

○ 김 현 상임위원

- 1/2, 1/2 해서 50만 원, 50만 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90일입니다. 그런데 90일을 2건이니까 더해서 135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미 과태료를 낸 것 아닙니까? 과징금은 과태료를 더 부과하겠다는 개념으로 늘어나는데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니까 이것은 감경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그것이 재량권이 아닙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제가 의견을 변경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과태료 200만 원, 그리고 과징금은 90일 기준으로 해서 가중·감경하지 않고 1,503만 원을 부과하는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김 현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 김 현 상임위원

- 100만 원으로 하고,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조정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 제가 마지막 절충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도 2건으로 하지 말고 1건으로 해서 10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2건으로 하되, 1/2 감경해서 각각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리고 과징금은 90일을 기준으로 해서 1,503만 원으로, 그래서 100만 원, 1,503만 원으로 합의를 하시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두 분이 하십시오. 저는 어차피 이것은 아예 처분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소수의견으로 하시지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알겠습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사무처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2건 각 50만 원씩 100만 원, 과징금은 90일 기준 1,503만 원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의 의견을 상세히 적으십시오. 과태료 부분이 100만 원입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예, 저는 100만 원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100만 원이고, 과징금은 90일의 절반을 감경해서 45일,
- 김 현 상임위원
  -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45일로 해서 752만 원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저와 이상인 위원님은 100만 원, 1,503만 원으로 했으니 2:1로 가결되었습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의결사항 나>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상당액의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고, 최초 위반사례인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액인 사무처 처음에 보고할 때는 가중한 1,400만 원까지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기준금액인 700만 원 과태료 처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고발하지 않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고발하지 않는 것은 의결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700만 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렇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예, 자료제출.

○ 김 현 상임위원

- 저는 그것은 부과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 현 위원님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행정지도 처분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은 700만 원 과태료 부과 의견 내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밝히면 저도 700만 원에 동의해서 2:1로 과태료 700만 원에 처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8. 기 타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9. 폐 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 12시 58분 폐회 】